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79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 : 김장겸 · 강승규 · 강대식

서일준 • 안철수 • 최수진

권성동 • 유상범 • 박정하

김예지・김 건・최보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구조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하고 클라우드 전환 촉진, 인공지능 등 민간의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계·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을 "제2항을"로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8 조의 개정규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 ② (현행 사업 참여 지원) ①・② (생 과 같음) 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 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 <신 설> 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 •기획 단계의 사업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 <삭 제>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 킬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 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u>4</u>
<u>제2항을</u>